

지방세 환급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				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				
	주소(영업소)							
환급 방법	[]현금지급 []계좌이체	금융회사	계좌번호					
지방세 환급금 내역	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납부일자	환급금	환급 가산금	총당액	청구액
				계			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환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(휴대)전화번호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(권리자)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				
권리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				
	주소(영업소)							
환급 방법	[] 현금지급	[] 계좌이체	금융회사 계좌번호					
지방세 환급금 내역	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대상	환급금	환급가산금	총당액	청구액
	계							

위의 지방세환급금을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(휴대)전화번호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

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(권리자)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(별지 제27호서식)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,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,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,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,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,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지방세 환급금 지급 영수증

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과세대상	①환급금	②환급가산금	③총당액	영수금액 (①+②-③)
계							
환급금		환급가산금		총당액		영수금액	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영수인
(서명 또는 인)